

제재내용 공시

1. 조합명 : 군산시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4. 3. 6.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정직 1명, 감봉 2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 사실

○ 주택건설자금대출 기성고 지급 부적정 등

가. 주택건설자금대출 기성고 지급 부적정

- 2급 이△△ 외 2명은 차주 송◇◇에게 주택건설자금대출 1,670,000천원 대출취급 약정 후, 기성고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기성액을 확인하고 건축공사비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사진행이 안된 상황에서 시공업체는 원자재, 인건비 등 선지급 명목으로 허위로 작성한 기성고 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조합에서는 해당 증빙서류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현장답사를 통한 기성고 조사·확인 없이 1차 및 2차에 걸쳐 기성고 대출금 총 800,0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2급 이△△ 외 2명은 차주 권♣♣에게 주택건설자금대출 1,930,000천원 대출취급 약정 후, 기성고에 따라 건축공사비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종 기성고 지급시에는 대출금액의 10%를 유보하여 준공 이후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차주와 시공업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최근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에 따른 해당 대출금 부실화를 우려하여 차주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정상화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대출금액의 10% 유보 없이 최종 준공승인 이전에 건축공사비 전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나. 여신관리자금 예치 부적정

- 2급 이△△ 외 2명은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시 자기자금부담액에 대하여 여신관리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게 하고 지급정지 등을 통하여 수협의 동의없이 인출이 불가하게 하며 여신관리자금으로 계획된 용도에 따라 차주로부터 수령위임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자에게 예탁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차주 명의의 요구불 예금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인정하여 부적정하게 대출을 취급하였음.

다. 주택건설자금대출 사후관리 부적정

- 2급 이△△ 외 2명은 차주 송◇◇, 권♣♣, 김☞☞에게 각각 주택건설자금대출

1,670,000천원, 1,930,000천원, 1,080,000천원 대출취급을 약정하고 공정표상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기성고 확인서를 1개월마다 징구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매월 기성고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답사를 통한 기성내역 등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 관련법규 >

1. 「수협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여신관리)
2.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3편 제3관(시설자금) 제48조(대출금의 지급)
3.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5편 제455조(대출한도), 제460조(대출금의 지급), 제462조(사후관리)